

심사보고서

충청북도 생활체육 진흥 조례안

심사보고서

2006. 12. 18.
관광건설위원회

1. 심사 경과

제출자 : 김인수의원의외 8

제출 및 회부일자

○ 제출일자 : 2006년 12월 5일

○ 회부일자 : 2006년 12월 5일

상정일자 : 제255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 2006. 12. 18 : 제8차 관광건설위원회의,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
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김인수 의원)

제안 이유

○ 도민의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장려하고 지원함으로써 생활체육
진흥을 도모하며 도민의 건강 진흥을 도모하려는 것임

□ 주요 내용

- 도민의 건강과 체력증진을 위하여 일상적인 체육활동을 권장하고 보호육성(안 제2조)
- 생활체육 관련단체 등 체육동호인 조직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근거 마련(안 제3조)

3. 검토보고 요지

(관광건설전문위원 유인종)

- 도민의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장려하고 생활체육 활성화를 도모하고 이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써
-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 요지 : 생략

6. 심사 결과 : 원안 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9. 심사보고서 첨부서류

- 충청북도 생활체육 진흥 조례안

충청북도 생활체육진흥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충청북도 생활체육진흥에 필요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충청북도민(이하 “도민”이라한다)의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장려하고 생활체육진흥을 도모하며 도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보조금의 지원)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 이라 한다)는 충청북도 체육동호인활동과 생활체육관련단체 등 체육동호인조직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3조(보조금의 사용) 보조금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사업이나 활동에 사용한다.

1. 범도민 체육 생활화운동 전개
2. 생활체육행사의 개최와 국제교류
3. 체육동호인 활동의 육성·지원
4. 생활체육진흥을 위한 조사·연구·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5. 생활체육관련단체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
6. 기타 생활체육진흥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충청북도보조금관리조례」가 정한 바에 의한다.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 계 법 령 발 취

□ 국민체육진흥법

제3조 (체육진흥 시책 및 권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체육진흥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고 국민의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권장·보호 및 육성하여야 한다.

제4조 (기본시책의 수립 등) ① 문화관광부장관은 국민체육진흥에 관한 기본시책을 수립·시행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장은 제1항의 기본시책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체육진흥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8조 (지방체육의 진흥) ①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주민의 건강과 체력증진을 위하여 건전한 체육활동을 생활화할 수 있도록 시설 등 여건을 조성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그 행정구역단위로 연1회 이상 체육대회를 직접 개최하거나 체육단체로 하여금 이를 개최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직장인체육대회를 연 1회 이상 개최하여야 한다.